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물위생관리사 면허 도입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7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5
1. 총괄적 검토	5
2. 조문별 검토	11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등)	11
나. 건물위생관리업의 종류 및 영업허가 등(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13
다. 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21
라. 위생교육 및 직무교육 등(안 제14조·제19조 및 제20조)	25
마. 위생관리기준 및 지도·감독(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27
바. 협회 및 공제사업(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9
사. 건물위생관리원 등 보호(안 제31조 및 제32조)	31
아. 벌칙 및 기타(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32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2.

(3) 회 부 일 : 2025. 12. 3.

2. 제안이유

최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초고층 건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출현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단순 신고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오늘날 요구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하여 건물위생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건물위생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최저가 낙찰 위주의 계약 관행과 잦은 업체 변경은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여 건물위생관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로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물위생관리 업무를 체계화·전문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건물위생관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등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등에게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 라. 전문적인 건물위생관리를 위하여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결격사유, 면허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건물위생관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매년 위생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 바. 건물위생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안 제26조 및 제29조).

사. 건물위생관리업자 등에게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아. 무허가 영업, 영업정지 중 영업 행위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하여
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0조).

II. 검토 의견

1. 총괄적 검토

□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건물위생관리업’에 관하여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려는 것으로, 현재 신고제인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교육·훈련과 자격시험, 위생관리기준 감독 및 건물위생관리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건물위생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제정안은 총 8장, 4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동 법은 건축물등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안 제1조)으로 하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결격사유, 허가의 취소 규정 등을 두며(안 제7조·제8조 및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하고(안 제14조), 자격시험을 통한 건물위생관리사 면허 취득(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안 제19조) 및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안 제20조)에 관한 내용과 함께 위생관리기준 및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그 밖에도 제정안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설립(안 제26조부터 제30조

까지), 건물위생관리원 등 보호(안 제31조 및 제32조),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관계 기관·단체의 협조 등(안 제7장)과 벌칙(안 제8장)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5조	제1조	목적	•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등 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제2조	정의	• 건축물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에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유자등: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건축물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 건물위생관리업: 건축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 등 위생관리를 수행하는 업 • 건물위생관리업자: 건물위생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건물위생관리사: 건축물등의 건물위생관리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물위생관리책임자: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 건물위생관리원: 건물위생관리업자 등이 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
	제3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건축물등 위생관리에 관한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 교육·홍보 활성화 등
	제4조	소유자등의 의무	•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할 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일반법(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이 법에 따름)
제2장 건물 위생 관리업 의 허가 등	제6조	영업의 종류	• 청소위생관리업/ 실내공기질관리업/ 급수위생관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종합위생관리업
	제7조	영업허가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건물위생관리업 영업허가 •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 미통지시 허가 간주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 유효기간: 5년/ 갱신허가
	제11조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준수 사항	•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물등의 시설·설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 •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평가를 받고 소유자등에게 보고할 의무 •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의무 • 허가받은 영업 외 다른 종류 영업 금지, 허가증 양도 금지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영업 허가 취소 • 공제가입 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 이행 후 영업정지명령 해제
	제13조	건물위생관리업의 승계	• 영업양도 및 합병 시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지자체장에게 신고
제3장 교육· 훈련과 자격제도	제14조	전문인력 양성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을 통하여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제15조	건물위생관리사 면허 등	• 건물위생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제16조	건물위생관리사 의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예외), 마약류중독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제18조	건물위생 관리책임자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사 자격 취득자 중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제19조	위생교육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제20조	직무교육	• 건물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건물위생관리원은 채용 후 6개월 안 및 이후 매 3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제4장 위생관리 기준 및 지도·감독	제21조 부터 제25조 까지	위생관리 기준, 개선 명령, 보고 및 출입· 검사, 건물 위생관리감 시원 등	• 건물위생관리업자,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의 위생관리기준 지정 • 보고 및 출입·검사 등 지도·감독
제5장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한국건물위 생관리협회 설립 등	• 협회 설립, 공제사업 등
제6장	제31조 및 제32조	건물위생 관리원 등 보호	• 적절한 임금,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승계 등
제7장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보칙	•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관계 기관·단체의 협조, 수수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벌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함. 1986년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 등이 「공중위생법」으로 통합되었고¹⁾, 여기에 2016년 「위생사등에 관한 법률」²⁾이 통합된 후 제

1) 1986. 5. 10.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법」이 제정됨(법률 제3822호).

2) 2007년부터는 법률 제명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었음.

명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된 이래 공중위생영업은 단일한 법 체계 내에서 통합적인 관리·규율을 받아 왔음.

□ 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율 대상에서 건물위생관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허가’를 요하는 업종으로 변경하고 건물위생관리원 등 보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물위생관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영세 업체의 종사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 제6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에는 청소위생관리업 외에 실내공기질관리업, 급수위생관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실내공기질관리업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급수위생관리업에 대해서는 수도 설치 및 관리를 규율하는 「수도법」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과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위생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사적 재산인 건축물 내 위생수준 전반을 국가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내공기질, 소독·방역, 급수 등은 이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중복 규율 우려가 있으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건물위생관리업만 별도 법으로 분리하는 것은 다른 공중위생영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분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건축물과 시설물을 위생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사적 재산인 건축물 내 위생수준 전반을 국가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내공기질, 소독·방역, 급수 등은 이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중복 규율 우려가 있으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건물위생관리업만 별도 법으로 분리하는 것은 다른 공중위생영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정화 및 환기 설비 등을 설치·개선하여 관리 중이므로, 관련 관리업에 대한 법 신설 불필요
국토교통부	○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법」에서 건축설비(환기설비 포함)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생관리와 환기설비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역에 환기설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변경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제한 및 시장 경쟁 저해 우려 ○ 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규정할 때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규율하고, 기존 공중위생책임자가 면허 취득 등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필요
질병관리청	○ 제정안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자에게 위생관리 관련 소독·방역 업무를 인정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자와 소독의무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혼란 초래 우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

	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구광역시	○ 현재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자는 주로 영세업자로서, 전문인력 확보·허가 조건 충족이 어려워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완화 또는 신고제 변경 필요 등
경상남도	○ 건축물 사용승인 소관 법령인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내 실내공기 관련 법령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과 연계하여 검토함이 타당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위생관리 산업 관련 ▲ 시장의 난립 ▲ 전문성 저해 현상 ▲ 계약 체결 시 최저가 낙찰제의 고착화 ▲ 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 ▲ 고용 불안정성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안과 같은 허가제 전환 및 면허제도 도입 필요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등)

- 안 제1조에서는 제정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위생관리업자, 건물위생관리사 등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 밖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안 제3조), 소유자등의 의무(안 제4조),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등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해당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해당 건축물등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축물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 등 위생관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물위생관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건물위생관리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건물위생관리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건물위생관리책임자”란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두는 사람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원”이란 소유자등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물위생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소유자등은 건축물등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등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물등의 위생관리 및 건물위생관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건물위생관리업’을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위생관리의 대상을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물³⁾”로 확대하고, 위생관리의 형태도 “청소등 대행”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물 전반에 걸친 위생관리 영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공중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까지 규율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해당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있고(안 제2조제2호), 소유자등에게는 건축물등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안 제4조). 다만, 소유자등에게 그 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단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⁴⁾ 이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한계도 있을 수 있겠음.

□ 그 외, 제정안 제2조제6호에서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음. ‘건물위생관리책임자’의 경우 안 제18조에서 건물위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지정하며, 건축물등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등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둘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⁵⁾.

3) 「건축법」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안 제11조에서 건물위생관리업자에게도 건축물 등의 시설·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안 제40조제1항제2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대조됨.

5) 그 밖에, ‘~는 자’(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는 사람’으로 자구 수정 필요가 있음.

나. 건물위생관리업의 종류 및 영업허가 등(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안 제6조에서는 건물위생관리업을 청소위생관리업, 실내공기질관리업, 급수위생관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종합위생관리업으로 나누고,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허가(안 제7조), 영업허가의 결격사유(안 제8조), 영업허가의 제한(안 제9조),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10조), 허가의 취소(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1조) 및 건물위생관리업의 승계(안 제13조)도 규정함.

제6조(영업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위생관리업: 건축물등의 실내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소독·방역 등을 수행하는 업
2. 실내공기질관리업: 건축물등의 실내공기정화 및 공기질 관리를 수행하는 업
3. 급수위생관리업: 건축물등의 급수설비 및 저수조 등의 위생관리를 수행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5. 종합위생관리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

제7조(영업허가 등) 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제6조 각 호의 영업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건물위생관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허가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영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물위생관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6. 제12조제1항제1호 외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9조(영업허가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물위생관리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건물위생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된 건물위생관리업체와 같은 명칭과 업종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건물위생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건물위생관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축물등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물등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생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위생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소유자등에게 보고하고 영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위생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장비나 약품 등을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와 건물위생관리원이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외의 다른 종류의营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외의 다른 종류의营업을 한 경우

5.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营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营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 기간에营업을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营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营업을 하는 경우 및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营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2.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营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3. 해당 영업소가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장 또는 사업장의 소유자등에 관련 내용의 통보

④ 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영업정지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물위생관리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영업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영업을 계속하려면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상속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영업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첫째, 건물위생관리업의 업종 구분에 관하여 살펴 봄(안 제6조).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은 ‘건물위생관리업’의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침묵하고 있음⁶⁾.

□ 제정안은 건물위생관리업에 ‘실내공기질관리업’, ‘급수위생관리업’을 포함

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숙박업’은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숙박업(일반)’ 및 ‘숙박업(생활)’로 세분함.

하고 있음.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규율하고 있고, 급수 및 수질 위생 관리는 「수도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므로⁷⁾, 제정안과의 관계에서 책임 분담이나 관리 효율성 문제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수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이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물환경보전법」 등도 있음.

□ 둘째, 건물위생관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 봄(안 제7조 및 제8조).

□ 강학상 신고는 국민의 자유로운 영업을 전제로 행정청에 알리는 제도인 반면,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것임.

< 허가, 등록 및 신고의 비교 >

구분	강학상 의의	특징	예
허가	일정한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강학상 허가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이나, 실정법상 부관(조건)을 붙이거나 재량행위에 가깝게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임	영업허가(금융업, 식품위생업, 보건의료업 등), 건축허가
등록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에 비치된 서류에 기재하여 그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실정법상 허가과 신고의 중간단계 정도인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건설기계 등록(강학상 등록), 건설업 등록(완화된 허가)
신고	사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있으며, 후자는 사실상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됨	부동산 거래 신고(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

출처: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323.

□ 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건물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도 규정함으로써 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7조제8항8)). 이는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행정 지연 방지를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도 식품조사처리업 등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⁹⁾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u>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u>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그 외, 제정안 제7조제1항부터 제10항,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 등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과 같이 약칭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8) 안 제7조제10항이나 제13조제5항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안에 수리 여부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9)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한편,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업종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는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자가 대부분 영세업자로서 전문인력 확보 및
허가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을 완
화하거나 신고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셋째, 안 제10조에서는 ‘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허
가 시 요구되는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위생 관리가 소홀해
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변화하는 실무 수련 환경에 상응하는 자격(건축사¹⁰⁾)이나 능력
유지(운전면허¹¹⁾), 등록 요건 충족(대부업의 자기자본 비율¹²⁾), 권리 연장
(도선 허가¹³⁾) 등이 필요하여 유효기간 및 갱신을 요하는 업종도 있음.

-
- 10)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
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
여 발급받아야 한다.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
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
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
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
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도선법」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
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
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 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안 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건물위생관리사 면허,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건물위생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음(안 제18조).

제15조(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등) ① 건물위생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물위생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외국의 건물위생관리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자격시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의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제8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건물위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물위생관리업무의 기획·진행·분석 및 평가
2. 건물위생관리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교수업무
3. 그 밖에 건물위생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⑪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수행하는 영업장에 1명 이상의 건물위생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건물위생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물위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건물위생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건물위생관리사의 면허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건물위생관리책임자) 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건물위생관리책임자는 건축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등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2. 건축물등의 위생 상태에 관한 기록 작성 및 보관
3. 건축물등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4.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③ 건축물등의 소유자등 또는 이용자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제정안에서 건물위생관리사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 등 사유를 규정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와 유사한 체계로 보임.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제정안 제17조에서는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 사유 및 취소 사유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건물위생관리사의 직무범위’(안 제15조제10항) 및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에 건물위생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제15조제제11항)은 안 제15조의 면허 관련 규정과 별도 조문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 체계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 그 외,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규정한 안 제18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업종을 설정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위생교육 및 직무교육 등(안 제14조·제19조 및 제20조)

□ 안 제14조·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건물위생관리업자,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한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대학,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건물위생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19조(위생 교육) 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영업장별로 해당 건물위생관리업체의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을 지정하고 그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위생관리원이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 또는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직무 교육) ① 건물위생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보건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건물위생관리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 후 6개월 안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건물위생관리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 또는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직무교육의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건물위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물위생관리업자,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 등 관련 인력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위생관리 기술과 안전 관리에 관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물위생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안 제19조) 및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안 제20조)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건물위생관리업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2 이상의 장소에서营业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영업장별로 해당 건물위생관리업체의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을 지정하고, 그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하고 있음(안 제19조제3항). 이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위생교육이 다소 소홀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위생관리기준 및 지도·감독(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는 건물위생관리업자,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개선 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건물위생관리감시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제21조(위생관리기준) ① 건물위생관리업자,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이 영업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종사자등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3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등의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등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건물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4조(건물위생관리감시원) 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건물위생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위생관리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명예건물위생관리감시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등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건물위생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건물위생관리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건물위생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안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안 제38조제2항제2호)도 있는 만큼, 법률에 위생관리기준의 대략적 범위를 정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바. 협회 및 공제사업(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 안 제26조에서는 건물위생관리업자로 하여금 전국적 조직을 가진 ‘한국 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사업 등(안 제28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26조(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축물등 위생관리의 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의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물위생관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업무
2. 종사자등에 대한 위생교육 등
3. 건물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검증·관리 및 양성교육 등
4.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및 보급업무
5. 건물위생관리 관련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를 통한 개선업무
6.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에 대한 재해예방교육 및 지도
7. 건물위생관리 감시업무 등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28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29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손해배상 등) 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물등 또는 이용자 등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자율지도원 등) 협회는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 등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다.

□ 제정안은 법정 단체로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하여 종사자등에 대한 위생교육, 건물위생관리책임자 지도, 건물위생관리 감시업무와 함께 공제사업 등도 실시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면서 그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37조)도 적용받게 되는바, 현재 활동 중인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현 협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 실시기관으로 허가하여 위생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회원 대상 홍보, 정보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이 낮은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회계부실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바, 손해배상 사건의 발생 건수 및 액수 등에 관한 통계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사. 건물위생관리원 등 보호(안 제31조 및 제32조)

- 안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건물위생관리원 등의 근무환경 보장, 적정 임금 및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1조(건물위생관리원 등의 보호) ① 소유자등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 및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원을 위한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원의 개인위생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장구 및 위생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2조(건물위생관리원의 고용승계 등) ① 소유자등이 건물위생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종전의 건물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건물위생관리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종전 건물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건물위생관리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물위생관리업무와 종사자들의 경력관리, 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개인정보보호 대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건물위생관리원 등의 경우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은바, 제정안과 같이 소유자등에게 종사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위생·안전용품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고용승계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종사자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근로조건, 임금, 고용승계, 산업재해 예방 등은 기본적으로 노동 및 산업안전관계법에서 규율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아. 벌칙 및 기타(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 제정안은 허가 없이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9항 및 제11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업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건물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한 자
5.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체의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임원 또는 건물위생관리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자
8.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정안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의 경우 ‘미신고 숙박업’¹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부합하는 처벌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만원 이하’의 단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바(안 제40조), 위반행위의 양태 및 행정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도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01

¹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